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44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이건태・박균택・진선미
한준호・전현희・이수진
김 현・이언주・양부남
박성준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장기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및 군사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을 남용하여 반인권적 폭력 행위를 자행하기도 하였음. 그간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음.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사건의 은폐성과 권력의 개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상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고, 사법 정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국가폭력 피해

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법적 장벽을 제거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며, 향후 국가폭력을 예방하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법률 제 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희생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되지 못한 아픔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확립하고, 과거의 과오를 엄중히 규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수호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나.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제151조, 제152조, 제1

55조, 제225조부터 제230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